

**2021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
보조금 업무처리지침**

2020. 12.

환 경 부

목 차

1. 목적	1
2. 근거	1
3. 지원대상 및 금액	1
가. 지원대상자	
나. 지원대상 보일러	
다. 지원금액	
4. 보조금 예산의 교부	4
가. 보조금의 교부 신청	
나.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통보	
다.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변경	
5. 보조금 예산의 집행	5
가.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	
나. 보조금의 지급	
다. 지급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	
6.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	7
가.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	
나.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	

〈참고자료〉

[서식 1]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	16
[서식 2]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	17
[서식 3] 보조금 지급 요청서	18
[서식 4]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	19
[서식 5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	20
[서식 6]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	21
[서식 7]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	22
[서식 8] 신축 공동주택 설치 동의서	24

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

1. 목 적

- 질소산화물(NOx)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근 거

-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39조(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)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81조(재정·기술적 지원)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보조금법”이라 함)
- 환경부 고시 제2017-103호(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)

3. 지원 대상 및 금액

가. 지원 대상자

1. 일반 (20만원 지원)

-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(교체)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. 다만, 공공기관과 공공시설*, 그리고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**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*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. 단, 제3호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공공 임대주택은 예외적으로 허용

** 「주택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의 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

-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시 노후 보일러* 교체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, 추가적으로 지자체상황에 맞게 보조금 지급 대상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.

* 노후 보일러는 설치 후 10년 이상 사용한 보일러를 말하며,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.

◎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(예시)

1. 노후 보일러(10년 이상)를 교체한 경우
2. 대기관리권역 지역 우선 지원
3.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(개인주택 우선 지원)

-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*를 받아야 한다.

* [서식3]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

- 신축 공동주택*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**에게 지원 가능하며,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(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)로 본다.

*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세입자 제외

** 원칙적으로 '분양받은 자'를 의미함. 다만,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(건설업자)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(첨부서류 제출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)

2. 저소득층 (60만원 지원)

-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(교체)하는 저소득층*(수급권자, 차상위 계층)에게 지원한다.
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,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
-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*를 제출하여야 하고,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*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

3. 시범사업 (공공임대주택)

- 지자체는 공공임대 아파트 또는 소규모 단지의 보일러를 일괄 교체 (저소득층 지원포함)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(‘20.하반기)
-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 사업자이며, 공공임대 주택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한정*할 수 있다.
- * ‘20.10월이후 잔여예산 및 수요 조사 등을 통하여 세부내용 확정(환경부 협의 후 시행)

나. 지원 대상 보일러

- 동 지침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(이하 “지원 대상 보일러”)라 함은 시간당 증발량이 0.1톤(또는 열량 61,900kcal)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*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.
- *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, 「대기관리권역법」에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(1종·2종)는 대상이 아님
- ※ ‘20.12.31. 기준 451개 인증되었으며, 인증현황은 el.keiti.re.kr을 통해 확인
- 보조금 지급 대상은 ‘21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,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“설치시”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.

다. 지원 금액

- 지원 대상 보일러 1대당 일반 20만원, 저소득층(수급권자, 차상위계층) 60만원을 지원하며, 국비(60%)와 지방비(40%)를 합한 금액으로 지원한다.
- ※ 단, 평택시의 경우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국고 80%를 지원
- 다만, 보일러 설치비용이 지원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보일러 설치금액만 지원한다.

4. 보조금 예산의 교부

가. 보조금의 교부 신청

- 관련 법 : 보조금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
-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“자치단체의 장”이라 함)은 매년 1월말까지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[제1호 서식]를 지방환경관서의 장(이하 “환경청장”이라 함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나.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통보

- 관련 법 : 보조금법 제17조
- 환경청장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[제2호 서식]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다.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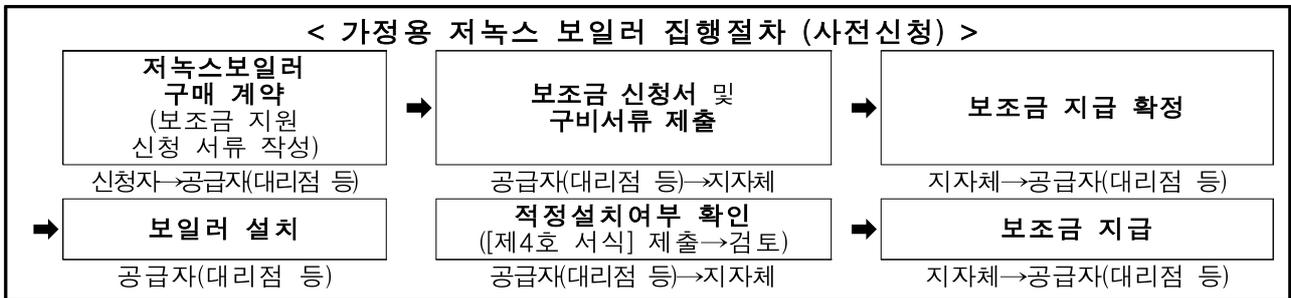
- 관련 법 : 보조금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
- 환경청장은 교부 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5. 보조금 예산의 집행

가. 보조금의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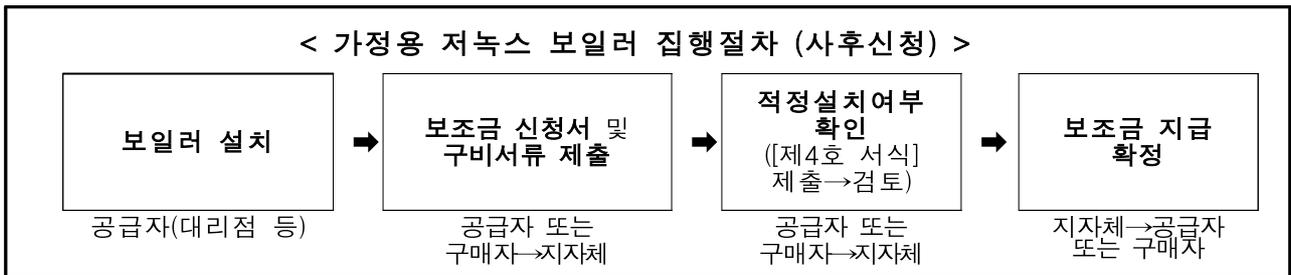
- (사전신청) 보조금 신청자(구매자)와 공급자*는 보조금 지급 요청서[제3호 서식]와 구매 계약서(또는 견적서, 이하 동일함)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, 공급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*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,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·판매하는 자를 말한다.



※ 공급자(대리점 등) 등에서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

- (사후신청)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다.



-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,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또한,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, 계약서 상 명시하여야 한다.

-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, 공급자에게 결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지급 결정된 보일러의 설치 확인을 완료(제4호 서식의 설치 확인서를 접수)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설치 확인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 - ※ 다만, 천재지변이나 재난·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일을 늦출 수 있다.

나.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

- 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대상자 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,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한다.
 -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
 -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 - ③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
 - ④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 - ⑤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,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·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(콘덴싱)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
 - ⑥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15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야 한다.
 - ※ 다만, 제③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생략이 가능하다

○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리 신청한 공급자의 경우에는 1년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을 금지하여야 한다.

※ 다만, 보조금 신청을 금지받은 공급자가 정상적으로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는 구매자가 직접 사후신청은 가능함.

6.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

가.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

○ 관련 법 : 보조금법 제25조

○ 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지원 대상자 확정 내역, 지원 대상 보일러 설치 현황(제작사, 판매사, 설치장소, 모델명, 용량, 제조번호 등) 및 보조금 지급 실적 등의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[제7호 서식]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나.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

○ 관련 법 : 보조금법 제27조

○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, 보조사업 폐지승인,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완료·승인·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청장에게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[제7호 서식]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실적 보고 시에는 사업비 집행 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,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(지출결의서 사본 등),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 집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참 고 자 료

[서식 1] 국고 교부금 교부 신청서

[서식 2] 국고 교부금 교부결정 통지서

[서식 3] 보조금 지급요청서

[서식 4] 저녹스 보일러 설치확인서

[서식 5]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
이행확인 서약서

[서식 6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

[서식 7]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

[서식 8]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

[서식 9]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[제2호 서식]

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부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.

1. 보조사업 수행기관 :

2. 예산과목

○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: 073-1600-1631-301-330-03

3.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내역

사업명	사업비(천원)		
	계	국고	지방비
【합 계】			

4. 교부조건

가.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.

나.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수행보고 및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.

다.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,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.

라. 국고보조금의 집행시 「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」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.

마. 기타 교부조건은 지방환경관서장이 부여할 수 있음. 끝.

지방환경관서장

[제4호 서식]

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

※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목록제출

1. 보일러 제작사 및 모델명

○ 제작사 :	○ 판매사 :
○ 모델명 :	○ 보일러용량 : Kcal/hr
○ 제조번호(S/N) :	○ 설치대수 :

2. 설치일자 : 2021년 월 일

3. 설치장소(주소) :

4.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

설치완료 된 보일러 사진	'시공표지판' 표시 사진 - 시공자 - 보일러 (제조자명, 모델명, 기종, 제조번호) - 시공내역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시공표지판 사진 부착
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 - 기존보일러 제조명판이나 시공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에 기재 필요(설치 연도 확인이 필요)	시공중인 현장 사진 - 기존보일러 제거된 신규 보일러 설치 전 사진 - 반드시 '21년에 설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, 휴대폰 날짜 등이 사진상에 함께 표시 필요

5. 별첨 : 세금계산서, 영수증(현금영수증, 카드영수증)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(신축 공동주택 최초 소유자 등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)

※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간이영수증은 불가함.

위와 같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자 : (서명 또는 인)

공급자 : (서명 또는 인)

[제7호 서식]

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

(20 . 분기)

1. 시·도명 :

2.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현황

시·군·구	()분기 지원 현황				년 누적 지원 현황				
	개수	지원 금액			개수	지원 금액			국비 잔액
		합계	국비	지방비		합계	국비	지방비	
【합 계】									

3. 지원 현황

시군구	일반현황			용량 (Kcal/ hr)	사용료	보일러			지원내역			지급 일자
	이름	설치 장소	전화 번호			제작 사	판매 사	모델 명	총액	국비	지방 비	
	【합계】											
	【합계】											
	【합계】											

4. 특이사항

[제8호 서식]

보조사업 실적 보고서

사업명	보고기관	보고기준일

(담당부서, 작성자, 전화번호)

1. 사업개요

시설소재지 또는 사업지역	사 업 량

2. 연도별 자원별 예산현황

(단위 : 원)

구 분	총예산	연도별 자원별 예산내역			
		2017	2018	2019	2020
합 계					
국 비					
지방비	소 계				
	시·도비				
	시·군비				

3. 예산집행실적

당해연도 결산 세부내역

(단위 : 원)

구 분	20 . . . 현재 집행현황						
	예산 (A)	전년도 이월액(B)	예산현액 (C=A+B)	지출원인 행위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
합 계							
국 비							
지방비	소 계						
	시·도비						
	시·군비						

○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

-
-
-

4. 보조금 지급 현황

※ [제7호 서식]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의 3호 세부지원현황 서식 참조

[제9호 서식]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이용 사무(이용목적)	공동이용 행정정보	동의여부 (동의 시 서명 또는 인)
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	일반 건축물대장	
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	
	차상위계층확인서	

2. 이용기관의 명칭 : 보조금 집행기관 기재 (00광역시 00구)

3. 정보주체(본인)동의사항 등

-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.

-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
대상자 본인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 생년월일 :
 전화번호 :